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방위사업법」 제17조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통합소요기획’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는 검토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국방 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선행연구’ 수행시점이 ‘소요결정 과정’에 통합됨에 따라,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 등을 삭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0000호, 2026. 0. 00.>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주체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 -----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게 <u>소요가 결정된 해당</u>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① ---- ----- ----- ----- <u>해당</u> ----- ----- -----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u>무기체계 등</u>의 <u>소요결정과 제1항</u>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 -----. ②----- <u>제1항</u>----- ----- ----- ----- ----- ----- -----.
---	--